

이사회규정

제정 : 1988.8.11

1 차 개정 : 1989.8.23 10 차 개정 : 2003.12.24

2 차 개정 : 1991.4.24 11 차 개정 : 2008.3.28

3 차 개정 : 1992.6.19 12 차 개정 : 2009.3.13

4 차 개정 : 1992.12.28 13 차 개정 : 2012. 3. 23

5 차 개정 : 1994.7. 7 14 차 개정 : 2012. 4. 26

6 차 개정 : 1997.5.12 15 차 개정 : 2017. 2. 23

7 차 개정 : 1998.6.19 16 차 개정 : 2017. 3. 24

8 차 개정 : 2000.4.24 17 차 개정 : 2021. 5. 27

9 차 개정 : 2002.3. 8 18 차 개정 : 2024. 3. 26

제 1 조(목적)이 규정은 SK 텔레콤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이사회
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이사회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로 정하는 경
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(기능)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
시책을 심의·의결한다.(2000. 4. 24 본 조 개정)

제 3 조의 2(경영철학의 실행)

①이사회는 회사의 정관 전문에 반영된 경영철학(이하 "회사경영철학")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개발하고,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.

②이사회는 회사 경영철학을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'SK' 의 기업문화가 유지,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③이사회는 SK Brand의 사용에 있어 Brand 가치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.

④이사회는 SK Brand 의 가치와 SK 기업문화의 유지,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SK Brand 와 기업문화를 함께 사용하는 타 회사들과 상호 협력방안을 수립, 실행한다.

(2017. 3. 24 본 조 개정, 2021. 5. 27. 본 조 개정)

제 4 조(구성)①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.

②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, 이사회 의장이 유고시에는 이사회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회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직무를 대행할 이사를 정한다.(2009. 3. 13 본 항 개정)

③이사회는 이사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케 하기 위하여 간사 1 인을 두되, 간사는 이사회 업무의 주무부서장으로 한다.(1994. 7. 7 본 항 개정)

제 4 조의 2(이사회 종류)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
②정기이사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,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(2021. 5. 27 본 조 신설)

제 5 조(대표이사의 선임)(1994. 7. 7 삭제)

제 6 조(소집)①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대표이사 또는 의장이 소집한다.(2012. 4. 26 본 항 개정)

②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(2002. 3. 8 본 항 신설)

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 일전까지 일시, 장소, 회의안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(2002. 3. 8, 2024. 3. 26 본 항 개정)

④이사전원의 사전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절차 없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.(2002. 3. 8 본 항 개정)

제 7 조(부의사항)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(1998. 6. 19 본 항 개정)

1. 주주총회 소집 및 제출안건
2. 재무제표의 사전승인
3. 신주발행 사항에 관한 결정
4.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상환계획
5. 준비금의 자본전입
6. 대표이사, 공동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(2021. 5. 27 본 호 개정)
7. (2008. 3. 28 삭제)

8. 지점의 설치, 이전, 폐지
9. 기업지배구조헌장, 이사회규정, 위원회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(2021. 5. 27 본 호 개정)
10. 연간 경영계획 (2021. 5. 27 본 호 개정)
- 10 의 2. 전사 핵심성과지표(KPI) 및 KPI 성과 평가 (2021. 5. 27 본 호 신설)
11. 건당 자기자본 1.5% 이상의 투자계획 또는 예산 증액을 통해 건당 자기자본 1.5% 이상이 되는 투자계획(2012. 3. 23 본 호 개정)
12. 투자계획 중 건당 자기자본 1.5% 이상의 예산증액(2012. 3. 23 본 호 개정)
13. (2008. 3. 28 삭제)
14. 자기자본 1.5% 이상의 출자 및 합작(2012. 3. 23 본 호 개정)
15. 자회사의 설립
16. 자기자본 1.5% 이상의 보증(2012. 3. 23 본 호 개정)
17.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행하는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이거나 50 억원 이상의 자금·유가증권·자산 거래, 보증, 출자. 단, 100 억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재적 사외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재적 사외이사 과반수가 승인한 경우 정관 제 45 조의 2 에 의한 사외이사 사전승인을 득한 것으로 한다.(2012. 3. 23 본 호 개정)
18. 제 17 호와 관련하여 이미 공시한 사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요 내용의 변경(2000. 4. 24 본 호 신설)
19. (2008. 3. 28 삭제)
20. 회사가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 외국법인 또는 단체의 주식·출자지분 기타 해외자산을

취득하거나 회사의 자회사로 하여금 위 주식·출자지분 기타 해외자산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. 단, 재적 사외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재적 사외이사 과반수가 승인한 경우 정관 제 45 조의 2 에 의한 사외이사 사전승인을 득한 것으로 한다.(2008. 3. 28 본 호 개정)

21. 회사 경영철학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실천방법 개발, 정립 및 수정 (2017. 3. 24 본 호 개정)

22. 10 억원 이상의 기부. 단, 태풍, 홍수, 화재,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구호와 “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”에 따른 기부는 선집행 후 사후보고 할 수 있다. (2017. 2. 23. 본 호 신설)

23. 대표이사·사내이사의 이사 개인별 보수액 (2021. 5. 27 본 호 신설)

24.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법령 상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(2017. 2. 23. 본 호 개정, 2021. 5. 27 본 호 개정)

②제 1 항 각 호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결정과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.(1994.7.7 본 항 개정)

제 7 조의 2(사후 보고사항)대표이사는 매분기에 발생하는 다음 사항을 다음 분기에 첫 번째 열리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상반기 결산
2. 건당 50 억원 이상 자기자본 1.5% 미만의 투자집행(2012. 3. 23 본 호 개정)
3. 건당 자기자본 1.5% 미만의 출자 및 합작(2012. 3. 23 본 호 개정)
4. 비업무용 고정자산 취득
5. 건당 자기자본 1.5% 이상의 고정자산 처분(2012. 3. 23 본 호 개정)
6. 건당 자기자본 1.5% 미만의 보증관련 사안(2012. 3. 23 본 호 개정)

7. 사외이사 사전승인 대상 외의 내부거래

8.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사항 중 이사 요청사항(1998. 6. 19 본 조 신설)

제 8 조(의결)①이사회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

②의장은 이사회에서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에 응하게 할 수 있고,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(1994. 7. 7 본 항 개정, 2021. 5. 27 본 항 개정)

③의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. 단,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다.

④(2000. 4. 24 삭제)

⑤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 (2021. 5. 27 본 항 신설)

제 8 조의 2(외부전문가 조력을 받을 권리)이사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(2021. 5. 27. 본 조 신설)

제 8 조의 3(주주총회 의장 유고시 처리)주주총회 의장인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사내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주주총회 의장 대행자가 된다.

(2021. 5. 27 본 조 신설)

제 9 조(의사록)이사회는 의사진행에 관하여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(2000. 4. 24 본 조 개정)

제 10 조(위원회)①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. (2021. 5. 27. 본 항 개정)

1. 감사위원회
2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
3. 인사보상위원회
4. 미래전략위원회
5. ESG 위원회

②(2003. 12. 24 본 항 개정, 2021. 5. 27 본 항 삭제)

③제 1 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(2003. 12. 24 본 항 신설, 2021. 5. 27 본 항 개정)

제 11 조(실비지급)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에게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그 금액 및 지급방법 등은 대표이사가 정한다.
(2000. 4. 24 본 조 개정)

부 칙(1988. 8. 11 규정 제 16 호)

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89. 8. 23 개정 제 16-1 호)

①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

②(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경과조치)이 규정 시행당시의 대표이사는 이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로 본다.

부 칙(1991. 4. 24 개정 제 16-2 호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

부 칙(1992. 6. 19 개정 제 16-3 호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2. 12. 28 개정 제 16-4 호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4. 7. 7 개정 제 16-5 호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7. 5. 12 개정 제 16-6 호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8. 6. 19 개정 제 16-7 호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0. 4. 24 개정 제 16-8 호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2. 3. 8 개정 제 16-9 호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12. 24 개정 제 16-10 호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8. 3. 28 개정 제 16-11 호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3. 13 개정 제 16-12 호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3. 23 개정 제 16-13 호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자기자본) 본 규정 제 7 조 및 제 7 조의 2 에서 정한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개별 기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를 말한다.

부 칙(2012. 4. 26 개정 제 16-14 호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2. 23 개정 제 16-15 호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3. 24 개정 제 16-16 호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

부 칙(2021. 5. 27 개정 제 16-17 호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 3. 26 개정 제 16-18 호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